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1886 발의연월일: 2021. 8. 3.

발 의 자:성일종·강민국·김정재

이양수・임이자・이명수

정운천 • 전주혜 • 김은혜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의 화해'라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음에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2019헌가17)이라고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단서신설).

법률 제 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203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203호 5・18민주화운동	법률 제18203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② (생	등과의 관계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③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
	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u>하다.</u>